페루

「국가계약법」(정부조달계약)에 관한 보고서

1. 개요

페루는 리마(Lima)를 수도로 하는 중남미 국가로, 남아메리카 중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인접국가로는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등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잉카 제국으로 더 유명하다.

페루는 세계20위에 달하는 국토 면적(1,285,216km^2)을 자랑하고 있으며 인구는 약 3천만 명으로 그 규모가 세계41위에 달한다(2013년 기준).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2012년 IMF 조사에 따르면 페루 GDP는 총 1,849억불로 세계54위 수준이다. 페루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기준, 페루의 최저임금이 월 295불(US$), 인플레이션은 2.65% 수준으로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페루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은 2011년 8월 1일 발효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경제적・외교적・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KOICA를 통한 한-페루 경제협력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빈곤퇴치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페루정부의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2. 「국가계약법」의 주요내용

페루 내 국가계약, 다시 말해 정부조달과 관련된 계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이 바로 「국가계약법 제1017호」이다.

총 70개의 조항과 최종, 임시조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계약(정부조달)절차, 이해관계자의 권리, 의무, 감독기관, 벌칙(행정벌)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국가계약법 제1017호」의 하위규칙(D.S. 184-2008-EF)은 총 29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계약법」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 Information Center

2008년 제정된 이 법은 2012년 6월 1일 「법률 제29873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고 하위규칙 또한 2012년(D.S. 138-2012-EF)과 2013년(D.S. 116-2013-EF)에 각각 일부 개정되었다.

「국가계약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은 총칙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해 제1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제품·서비스 또는 공사에 대한 계약 체결절차에 반영해야 하는 기준 및 방침과 이와 관련된 의무·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다 유리한 계약조건(가격·질) 하에 효율적인 공공계약을 체결하여 페루 납세자가 부담한 돈의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정목적, 제2조).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발전 촉진의 원칙: 정부조달계약을 통해 페루 내 국민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② 도덕성의 원칙: 정부조달계약과 관련된 내용은 정직·청렴·정의·성실 등과 같은 도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③ 경쟁성의 원칙: 정부조달계약의 체결을 위한 입찰은 객관적이고 공평해야 하며 다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공평성의 원칙: 수요기관과의 계약체결 시 진행하는 모든 결정사항, 협약, 의사표시 등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 법과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 Information Center

관련 하위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⑤ 합리성의 원칙: 정부조달목표 및 공익을 위해 합리적인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⑥ 효율성의 원칙: 정부조달계약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우 체결된다(질, 가격, 기간 등).

⑦ 공개성의 원칙: 정부조달과 관련된 입찰공고는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⑧ 투명성의 원칙: 정부조달계약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입찰자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⑨ 경제성의 원칙: 정부조달계약의 체결을 위한 모든 절차는 경제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간단하고 간소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천연자원 등의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⑩ 최신기술도입의 원칙: 정부조달계약의 체결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제품·서비스 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신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⑪ 평등성의 원칙: 특정인을 위한 특권·특혜를 부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⑫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원칙: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기준을 바탕으로 조달계약을 진행한다.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 Information Center

2. 조달절차

「국가계약법」 제2장은 정부조달계약의 최종 입찰자로 선정되기 위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공급자등록소(Registro Nacional de Proveedores) 등록: 페루에서 정부조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국가공급자등록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다(흔히 "벤더Vendor" 등록이라고도 함). 국가공급자등록소에 사업자 또는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감독청(Organismo Supervisor de las Contrataciones del Estado)에서 본인의 납세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입력하여 직접 확인 가능하다.

이와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개인(자연인):
  - 정부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만 18세 이상의 성인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 Information Center

- 법적으로 행위능력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유효한 납세자등록번호(numero de RUC, 또는 납세번호) 소지자

- 법인:
  -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
  - 상업등기청(SUNARP)에 등록된 법인
  - 유효한 납세자등록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소지한 법인
  - 국가공급자등록소에 등록을 진행할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법인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인 또는 법인은 국가공급자등록소에서 마련하는 신청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신청서 양식: 그림1. 참고).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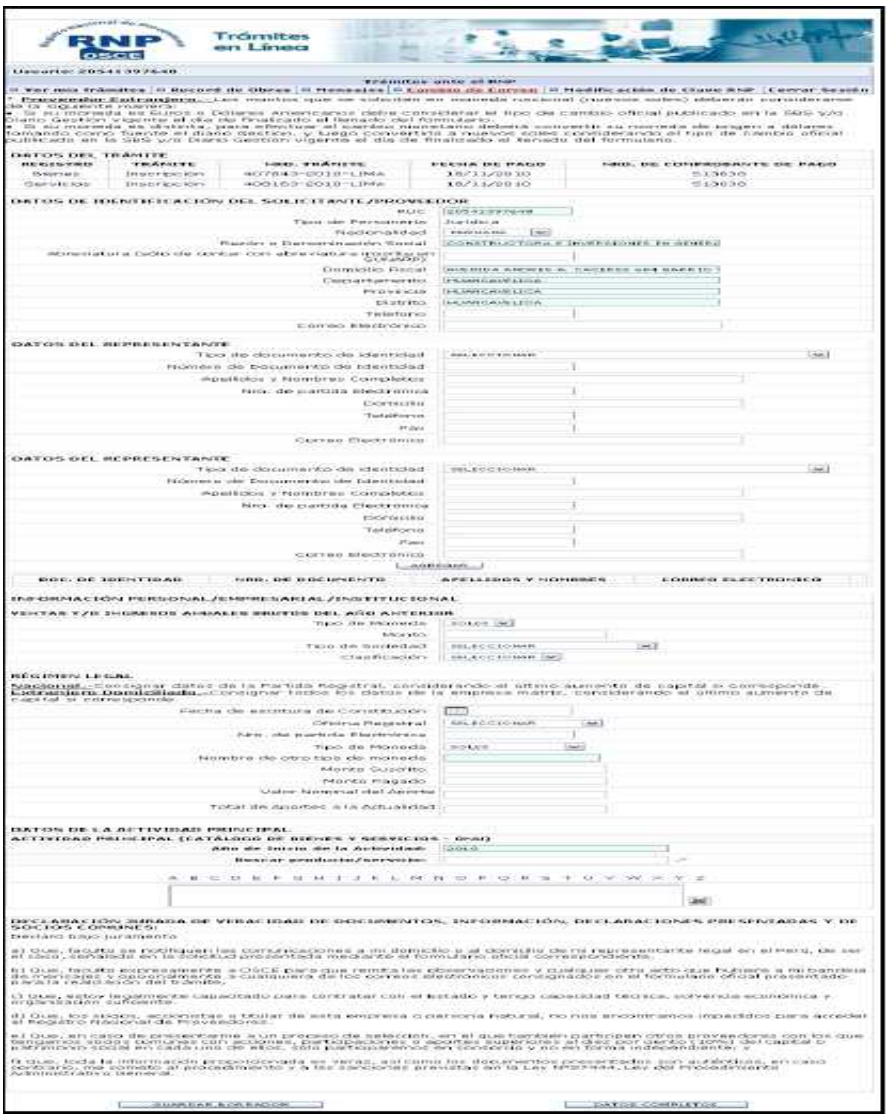

<그림1. 제품・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등록신청서 양식>

② 입찰공고 검색(http://www2.seace.gob.pe/): 페루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입찰공고에 대한 정보는 페루 정부조달감독청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③ 입찰공고의 참여: 입찰자신청을 거쳐 수요기관의 해당

조달사업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참가자들의 제안서가 모두 제출되면 특별위원회(Comité especial)의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제안서를 채택한다.

④ 정부조달계약 체결(서명)

3. 입찰자 선정

공공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입찰자 선정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공개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Licitación Pública)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Concurso Público)

-직접경매(Adjudicación Directa)

-소량경매(Adjudicación de menor cuantía)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 Information Center

이러한 입찰자 선정과정은 하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역경매 또는 기본협정 등을 통한 선정과정에 맞춰 진행된다. 각 선정과정의 선정방식, 선정기간, 조건, 절차, 특징 등은 하위규칙을 통해 규정한다(제15조).

공개입찰 또는 일반경쟁입찰은 각종 물품을 공급・제조・설비하기 위함이고, 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함이다(제16조).

입찰자 선정방법	대상
공개입찰	물품
경쟁입찰	서비스

<표1. 국가계약법상 공개입찰과 경쟁입찰의 차이>

직접경매는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입찰자 선정방식으로, 「공공부문 예산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정해진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진행 가능하다. 자세한 절차나 계약조건 등은 하위규칙을 통해 정한다(제17조).

세계법제정보센터

소량경매는 계약금액이 「공공부문 예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공개입찰 또는 경쟁입찰 계약금액 최저가의 1/10에 못 미치는 경우에 진행된다. 자세한 절차나 계약조건 등은 하위규칙을 통해 정한다. 또한 소량경매는 (하위규칙이 정하는)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경매(인터넷경매)를 통해 이뤄진다(페루 정부조달감독청 전자계약 http://www.comprasestatales.org/).

「국가계약법」제19조는 입찰자 선정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물품·서비스 및 각종 공사집행계약 등을 분할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중소기업 또는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계약의 특성에 따라 단계별·구간별·구획별 계약으로 나뉘는 경우는 분할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제재무부는 노동고용촉진부와 생산부의 의견을 수렴, 법규명령(Decreto Ley)을 통해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경제·생산·산업분야를 정한다.

제19조에서 명시하는 분할금지를 위반할 시, 계약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그 책임을 진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입찰자 선정절차가 면제된다(제20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① 공공기관 간 계약;

② 자연재해로 인한 비상사태, 긴급 상황 또는 국방 및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③ 공급·보급중단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활동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④ 페루 감사원(Contraloria General de la Republica)의 찬성 의견서를 바탕으로, 군사·경찰조직 또는 페루 국가정보원(Sistema Nacional de Inteligencia)의

기밀・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⑤ 물품・서비스 공급자가 유일하고 대체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공급자・생산자의 기술적・권리보호적 차원인 경우 등.

4. 특별위원회(Comite Especial)

공개입찰과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모든 입찰과정을 주관하게 될 '특별위원회'(Comité Especial)를 지정한다. 직접경매에 관한 '정기특별위원회'(Comité Especial Permanente) 또는 '임시특별위원회'(Comité Especial ad hoc)의 구성 및 지정은 하위규칙을 통해 진행한다.

이 특별위원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되며, 한명은 해당 물품・서비스・공사 분야의 관계자, 다른 한명은 공공계약의 체결을 담당하는 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자들은(한명 이상) 계약목적에 관한 기술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특별위원회는 입찰기준(Bases)을 마련한다(제24조).

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입찰자 선정절차가 합법적인지 여부 등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제25조).

5. 입찰기준(las Base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해당 공공기관의 책임자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공무원)이 정하게 된다. 이렇게 마련되는 입찰기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최대한 많은 입찰참가자를 유치 또는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
- 물품・서비스 또는 공사 등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사항, 인도・제공 또는 시행장소, 집행기간 등;
- 하위규칙으로 정하는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방식 및 입찰공고기간;
- 이 법과 하위규칙이 규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찰방식 또는 제도;
- 입찰자 선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표;
- 입찰자 선정을 위한 선정방식 및 평가기준;
- 계약서 양식(계약조건 포함);
- 공공기관이 정하는 예정가격(Valor Referencial);
- 융자 또는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 적용되는 법령;
-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또는 기획서 내용에 관한 기밀유지 방법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egislation Information Center

등.

입찰참가자를 비롯하여, 정부기관은 입찰기준, 「국가계약법」 및 하위규칙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정부조달감독청은 입찰기준의 표준(Bases Estandarizadas)을 마련한다(제26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자료 출처: 페루 정부조달감독청(http://www.seace.gob.pe/),
「국가계약법」(http://new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law/29825)>